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. 3. 13 선고 2018가단151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9. 2. 13.

판결 선고 2019. 3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경북 예천군 C 대 2,022㎡ 중

1) 별지 감정도 표시(가) 부분 블록조 스레트 위 칼라강판 단층 주택 약 81.8㎡, (나) 부분 블록조 스레트 위 칼라강판 단층 창고 약 15㎡를 각 철거하고,

2) 별지 감정도 표시 4, 5, 6, 7, 40, 39, 38, 37, 36, 35, 34, 33, 32,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93㎡를 인도하며,

나. 135,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7. 11.부터 2019. 3. 13.까지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투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2018. 6. 30.부터 피고가 제1의 가. 2)항 기재 토지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연 56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25%는 원고가, 75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,8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6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8. 6. 30.부터 주문 제1의 가. 2)항 기재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

원고가 2016. 1. 28. 경북 예천군 C 대 2,022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취득한 소유자인 사실, 피고가 2006년경부터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, 5, 6, 7, 40, 39, 38, 37, 36, 35, 34, 33, 32,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93m²(이하 '이 사건 계쟁토지'라 한다)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(가) 부분 블록조 스투트 위 칼라강판 단층 주택 약 81.8m², (나) 부분 블록조 스투트 위 칼라강판 단층 창고 약 15m²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, 2호증의 기재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

원고가 2016. 1. 28.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, 피고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. 1. 28.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차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는 이를 월 200,0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나, 이 사건 계쟁토지의 차임이 월 200,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다만 피고는 원고의

소유권 취득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연 56,000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, 이 사건 계쟁토지의 차임이 적어도 연 56,000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.

원고는 2018. 6. 29.까지 발생한 차임에 대하여는 그 이자를 붙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, 2016. 1. 28.부터 2018. 6. 29.까지 발생한 차임은 135,627원(=연 56,000원 × 884일/365일)이 된다.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8. 6. 29.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, 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인데,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 이득으로 135,6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. 7. 11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. 3. 13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, 2018. 6. 30.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연 56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황성욱

별지